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14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현행)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조촌동 → 수송동(미장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8필지		3,730			
1	조촌동	조촌동	251-13	답	1	수송동	미장동	37-15
2	조촌동	조촌동	253-11	답	1,795	“	“	37-10
3	조촌동	조촌동	253-14	답	660	“	“	37-14
4	조촌동	조촌동	253-12	답	1	“	“	37-12
5	조촌동	조촌동	253-13	답	235	“	“	37-11
6	조촌동	조촌동	254-1	답	1,028	“	“	35-13
7	조촌동	조촌동	252-1	전	7	“	“	37-13
8	조촌동	조촌동	258-1	구	3	“	“	35-12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수송동 → 조촌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필지		100			
1	수송동	미장동	35-11	답	100	조촌동	조촌동	254-2

[별표 3] (개정안)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조촌동 → 수송동(미장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8필지		3,730			
1	조촌동	조촌동	3932-1	공원	1,023.8	수송동	미장동	640
2	조촌동	조촌동	3938-1	도로	22.2	“	“	641
3	조촌동	조촌동	3936-7	대	166.9	“	“	642
4	조촌동	조촌동	3936-8	대	267.6	“	“	643
5	조촌동	조촌동	3936-9	대	341.6	“	“	644
6	조촌동	조촌동	3936-10	대	686	“	“	645
7	조촌동	조촌동	3938-2	도로	6.3	“	“	646
8	조촌동	조촌동	3939-1	도로	259.7	“	“	647
9	조촌동	조촌동	3937-4	종교용지	621.7	“	“	648
10	조촌동	조촌동	3940-1	도로	338	“	“	649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수송동 → 조촌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필지		100			
1	수송동	미장동	521-1	공원	82.6	조촌동	조촌동	3941
2	수송동	미장동	599-1	도로	14.6	“	“	3942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15호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동진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책의 특성상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 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기타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16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서 “제7호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를 신규 추가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제15조 “영 제17조” 를 “법 제21조제1항” 으로 한다.

제24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를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연 3퍼센트의” 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으로
제33조제3항 “연 3퍼센트의” 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

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를 “영 제3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로 하고 동항 제4호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를 “제2조제2호” 로 한다.

제36조의2 제1항 중 “연 3퍼센트의” 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으로, 제2항 중 “연 3퍼센트의” 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를 “시” 로 한다.

제7호<신규>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61조제1항 중 “연 3퍼센트의” 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을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으로 “이자율은 연 3퍼센트” 를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로 한다.

제64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에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②----- -----.</p> <p>7. <신규>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p> <p>③ ----- ----- ----- -----제3항----- -----</p> <p>제15조(무상사용기간) ----- -----법21조제1항----- ----- -----</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삭제), 제30조(삭제), —, 제35조(삭제), ----- ----- -----</p>

현행	개정안
<p>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p> <p>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p>	<p>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p> <p>②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p> <p>③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 다음과 같다.</p>
<p>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4. -----제2조제2호 -----</p>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p> <p>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u>연 3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u>연 3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p> <p>① ----- ----- ----- ----- -----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u> ----- -----.</p> <p>② ----- ----- ----- ----- -----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u> ----- -----.</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① ----- ----- -----.</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17호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피해발생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삭제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담당”을 “생태환경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농업인”이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u>피해 발생일 현재 군 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u>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u>」 제3조 ----- ----- -.</p>
<p>제4조(피해보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2. (생 략)</p> <p>3. <u>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u></p> <p>4. ~ 6. (생 략)</p> <p>7. 「<u>자연환경보전법</u>」 제37조 규정에 의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는 제외한다.</p>	<p>제4조(피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삭제></p> <p>4. ~ 6. (현행과 같음)</p> <p>7.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16조 ----- -----.</p>
<p>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항만국장, 농정과장, <u>환경위생과장, 기술보급과장</u>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환경정책과</u> 장 ----- ----- ----- -.</p>

현 행	개 정 안
<p>③ ~ ④ (생 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환경정책담당</u>이 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생태환경계장</u>-----.</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18호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관할구역(시·군)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장치 등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19호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제8조2항 중 “제11조제1항” 을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적용대상 기관) <u>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u> 2. <u>시의회</u> 3. <u>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u> 4. <u>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u> 	<p>제4조(적용대상 기관) <u>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u></p>
<p>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생략)</p> <p>② <u>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u></p> <p>③·④ (생략)</p>	<p>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7조제1항</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u>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u> 2. <u>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u> 3. <u>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u> 	<p><u><삭 제></u></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0호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 내용 중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삭제하고 “제3조를 따른다” 로 한다.

제18조(시민의 참여) ① 내용 중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를 삭제하고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으로 한다.

② 내용 중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를 삭제하고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환경 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 (생 략)</p> <p>제18조(시민의 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등 환경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u>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u>를 둔다.</p> <p>② 제1항의 <u>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u>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정의) ----- -----.</p> <p>1. 환경 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시민의 참여) ① ----- ----- ----- <u>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u>-----.</p> <p>② ----- <u>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u>----- -----.</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1호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명칭을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를 삭제하고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내용 중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를 삭제하고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한다.

제2조(명칭) 내용 중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를 삭제하고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한다.

제4조제6항 내용 중 “위촉직은 관련분야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를 “위촉직은 관련분야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로 변경한다.

제13조 제3항 내용을 “시장은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월별 또는 일시에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용 중 “군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삭제하고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u>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제18조에 의하여 <u>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u>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은 "<u>푸른군산21추진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p> <p>제4조(구성) ① ~ ⑤ (생략)</p> <p>⑥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은 관련분야 추천을 받아 <u>시장</u>이 위촉한다.</p> <p>제13조(연구 및 지원) ①·② (생략)</p> <p>③ <u>시장이 연구과제(사업)를 부여하거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④ <u>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u>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u>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u>----- ----- -----.</p> <p>제2조(명칭) ----- "<u>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u>"----- -----.</p> <p>제4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성별</u> <u>을 고려하여 시장</u>-----.</p> <p>제13조(연구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이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월별 또는 일시에 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14조(수당 등) ----- -----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2호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변연건”을 “주변여건”으로 한다.

별표1의 일부제한지역 중 “닭·오리·개”를 “닭·오리·메추리·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p> <p>2.·3. (생 략)</p> <p>제5조(단속 및 처분) ① (생 략)</p> <p>② 사육지의 <u>주변연건</u>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 ----- -- · <u>메추리</u> 및 --.</p> <p>2.·3. (현행과 같음)</p> <p>제5조(단속 및 처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주변여건</u>----- ----- ----- -----.</p>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일부제한지역	
현행	개정
<p>○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 2,000미터 이내 - 닭·오리·개 : 1,000미터 이내 - 소·젓소 : 500미터 이내 - 양·사슴 : 300미터 이내 - 말 : 200미터 이내 	<p>○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 2,000미터 이내 - 닭·오리·메추리 개: 1,000미터 이내 - 소·젓소 : 500미터 이내 - 양·사슴 : 300미터 이내 - 말 : 200미터 이내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3호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2조의2 및 제23조” 를 “제21조 및 21조의 2”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4년이내로” 를 “5년으로” 한다.

제12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p> <p>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p> <p>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4년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⑥ (생 략)</p> <p>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p>	<p>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p> <p>④-----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p> <p>⑤----- ----- 5년으-----.</p> <p>⑥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4호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여금 4년마다 정기적으로” 를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4년마다” 를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u>하여금 4년마다 정기적으로</u>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실태조사) ① ----- -----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u>4년마다</u>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u>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u> ---.</p> <p>② (현행과 같음)</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5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정의)는 삭제한다.

제8조(허가취소)는 삭제한다.

제9조(명칭 및 위치) ① “군산시 공설묘지의 명칭은 군산시 공원묘지 (이하 “공원묘지” 라 한다)라 칭한다” 를 “군산시 공설묘지 (이하 “공설 묘지”)” 라 칭한다.

② “공원묘지” 를 “공설묘지” 로 한다.

제10조(사용) ① “공원묘지” 를 “공설묘지” 로 하고 “사체를” 을 “시신을” 로 한다.

③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를 “공설묘지 사용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계약 하고 60년을 초과 하지못한다.” 로 한다.

제11조(자격) “공원묘지” 를 “공설묘지” 로 한다.

----- “군산시인 자에 한하여” 를 “군산시민 인자에 한하여” 로 한다.

제13조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분묘의구조) “분묘의구조” 를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준” 으로 한다.

② ----- “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를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③ “묘지둘레석은 세로2미터 가로1미터 이내이며 비석은 1미터이하로써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묘지사용권의 승계” 를 “공설 묘지 사용권의 승계” 로 한다.

①은 삭제 한다.

② “호주상속자가 없을 경우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연고자 순위에 의한다” 를 “공설묘지 사용권의 승계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위에 따른다.” 로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 “사용료 및 관리료” 를 “사용료” 로 한다.

① “공원묘지” 를 “공설묘지” 로 하며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를 “공설묘지 사용료” 로 하고 “묘지사용 연장” 을 “묘지 재사용 계약” 으로 한다.

제17조(사용신고 취소)는 삭제한다.

제19조(사용신고) ①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체 매·화장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신, 개장유골 화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②은 삭제한다.

제20조(사용료) “승화원” 을 “화장시설” 로 한다.

제21조 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사용료감면) ①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25조(봉안기간) “봉안기간” 을 “봉안 사용기간” 으로 한다.

① 유골의 “봉안기간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준하여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를 유골의 “봉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사용 계약을 하여 연장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를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②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한다” 를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목함,한지함 제외)” 로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를 “사용료” 로 한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연장신청자는” 『별표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추모관 사용신고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를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를 추모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②은 삭제 한다.

제6장 사설봉안시설 <장제목 삭제>

제31조(구분)는 삭제한다.

제32조(설치)는 삭제한다.

제33조(안치유골)는 삭제한다.

제37조(위탁취소)는 삭제한다.

제38조(직원) “공설장묘시설(공원묘지, 승화원, 추모관)” 을 “ 공설장사시설 (공설묘지,화장시설, 추모관)” 로 하고 “공무원” 을 “장묘시설계” 로 한다.

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을 “사용료감면” 으로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 이라 함은 “공원묘지, 승화원” ,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를 “공설장사시설” 이라 함은 “공설묘지, 화장시설” ,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 한다” 로 한다.

② “공원” 묘지를 “공설” 묘지 하고 “사용료 및 관리료” 를 “사용료” 라 한다.

③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를 “사용료” 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사설묘지"라 함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p> <p>2. "공설묘지"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p> <p>3. "화장시설"이라 함은 사체, 유골, 태반(사산오물), 적출물등을 화장하는 시설을 말한다.</p> <p>4. "봉안시설"이라 함은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도자기와 같은 형태의 그릇에 담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봉안당" "봉안탑" "봉안묘"로 구별한다.</p> <p>5.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써의 봉안시설을 말하며, "봉안탑"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하고, "봉안묘"라함은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봉안당 및 봉안탑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p> <p>6.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p>	<p>2조(정의)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허가취소) <u>묘지 사용허가를 얻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묘지 사용일로부터 1년이상 제6조의 규정에 대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때</u> 2. <u>법령 또는 조례를 위배하여 독촉하여도 이에 불응할 때</u> 3. <u>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u> 	<p>제8조(허가취소) <삭제></p>
<p>제9조(명칭 및 위치) ①<u>군산시공설묘지의 명칭은 군산시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라 칭한다.</u></p> <p>②<u>공원묘지</u>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6, 22, 23, 24, 전452-3번지와, 군산시 오식도동 503-2번지 둔다.</p>	<p>제9조(명칭 및 위치) ①<u>군산시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칭한다.</u></p> <p>②<u>공설묘지</u>의 위치는 ----- ----- -----.</p>
<p>제10조(사용) ①<u>공원묘지</u>를 사용(사체를 매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u>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u></p>	<p>제10조(사용) ①<u>공설묘지</u>를 사용(시신을-----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설묘지 사용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계약하고 6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자격) <u>공원묘지</u>의 사용 자격은 사망자의 주소 또는 본적이 <u>군산시인 자에 한하여</u>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시 구역 이외의 거주자나 또는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1조(자격) <u>공설묘지</u>의 사용자격은 -----<u>군산시민 인자에 한하여</u>----- ----- ----- -----</p>
<p>제13조(분묘의구조) ① <생 략> ②분묘에는 반드시 <u>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13조(공설묘지 분묘의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분묘에는 반드시 <u>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③ <u>묘지둘레석은 세로2미터 가로1미터 이내이며 비석은 1미터 이하로써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u></p>
<p>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u>공원묘지 사용권은 호주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u> ② <u>호주상속자가 없을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연고자 순위에 의한다.</u></p>	<p>제15조(공설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삭제> ② <u>공설묘지 사용권의 승계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 의무 순위에 따른다.</u></p>
<p>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 <u>공원묘지</u> 사용자는 별표1의 <u>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u>를 매장신고할 때 또는 <u>묘지사용 연장</u>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6조(사용료) <u>공설묘지</u> 사용자는 별표1의 <u>공설묘지 사용료</u> 를 매장신고할 때 또는 <u>묘지 재사용 계약</u>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용신고 취소) <u>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u></p> <p>1. <u>사용신고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u></p> <p>2. <u>임의로 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u></p> <p>3. <u>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분묘를 미설치하였을 때</u></p> <p>4. <u>법령, 조례, 규칙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u></p>	<p>제17조(사용신고 취소) <삭제></p>
<p>제19조(사용신고) ①<u>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체매· 화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군산시에 거주하고있는 시민과 본적이 군산시인 자 또는 인접지역 거주자라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u></p>	<p>제19조(사용신고) ①<u>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신, 개장유골 화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삭제></p>
<p>제20조(사용료) <u>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u></p> <p>다만,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 군민이 공설화장시설 이용시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p>	<p>제20조(사용료)<u>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사용료 감면) <u><신 설></u></p>	<p>제21조(사용료 감면) ①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p>
<p>제25조(봉안기간)①유골의 봉안기간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준하여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는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으로 하되, 10년이 지난 무연고 유골은 모아서 화장후 일정한 장소에 매장한다. ②<생략> ③<생략></p>	<p>제25조(봉안사용기간)①유골의 봉안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사용 계약을 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봉안하는 유골은 <u>화장된 것</u>이어야 한다. ③ <생 략></p>	<p>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u>시장에게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u>하여야 한다. ②봉안하는 유골은 <u>화장된 것</u>이어야 하며 <u>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u>하여야 한다.(목함, 한지함 제외) ③현행과 같음</p>
<p>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u>연장신청자는 [별표 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추모관 사용신고</u>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봉안함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p>	<p>제27조(사용료)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u>재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를 추모관 사용허가</u>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p>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시설방안시설 전문	제6장 (장 제목) <삭 제>
제31조(구분) "시설방안시설"이라 함은 개인, 가족, 문중·종중, 법인등에서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등과 같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31조(구분) <삭 제>
제32조(설치) 봉안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당한 내부공간을 확보하여 6구 이상의 유골을 수장하여야 함. 2. 내부 구조물은 견고하게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3.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고 지하수의 배수 구조를 설치함. 4. 필요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5. 외형은 친근감 있는 조형물등으로 검소하게 치장함.	제32조(설치) <삭 제>
제33조(안치유골)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한 사체 및 유골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화장하여야 한다. 1. 무연분묘 정리시 발생하는 유골 2. 1종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3. 행려사망자중 연고자가 없는 자	제33조(안치유골)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위탁취소) <u>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1. <u>수탁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u></p> <p>2. <u>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u></p> <p>3. <u>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4. <u>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37조(위탁취소) <삭 제></p>
<p>제38조(직원) <u>공설장묘시설(공원묘지, 송화원, 추모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u>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8조(직원) <u>공설장사시설(공설묘지, 화장시설, 추모관)의 관리를 위해 장묘시설계</u>를 두되 -----</p>
<p>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① “<u>공설장사시설</u>” 이라 함은 <u>공원묘지, 송화원, 추모관</u>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p> <p>② <u>시장은 관내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원” 묘지,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료”</u>를 50% 감면할 수 있다.</p>	<p>제40조(사용료 감면)</p> <p>① “<u>공설장사시설</u>” 이라 함은 “<u>공설묘지, 화장시설</u>”,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p> <p>② -----</p> <p>----- “<u>공설</u>” 묘지, 추모관 “<u>사용료</u>”를 50% 감면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u>사용료 및 관리료</u> 50%, 단 임피면 공설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u>사용료 및 관리료</u> 80%, 그밖의 임피면민에 대하여는 공설장사시설 <u>사용료 및 관리료</u> 50%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 -----공설장사시설 <u>사용료</u> 50%, 단 임피면 공설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u>사용료</u> 80%, ----- 공설장사시설 <u>사용료</u> 50%를 감면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1]<개정2005.12.30> 공원묘지사용요금(제16조 관련)				[별표1] 공설묘지사용요금(제16조 관련)						
구 분	계	사용료	관리료	구 분	계	사용료				
1묘당(단위:원)	500,000	445,000	55,000	1묘당(단위:원)	500,000	500,000				
[별표2]<개정2005.12.30, 2008.05.20, 2014.04.28> 승화원 사용요금 (제20조 관련)				[별표2] 화장시설 사용요금 (제20조 관련)						
기준	구분	금 액 (원)			비 고	기준	구분	금 액 (원)		비 고
		관내 (군산시)	관 외 (도내)	(도외)				관 내	관 외	
1건당	15세이상	60,000	300,000	500,000		1건 당	15세이상	60,000	500,000	
	15세미만	45,000	150,000	300,000			15세미만	45,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300,000	
	사산오물	15,000	70,000	150,000			사산아	15,000	150,000	
1kg당	적출물	1,500	5,000	10,000						
[별표3] 추모관 사용요금(제27조 관련)				[별표3] 추모관 사용요금(제27조 관련)						
기 준	계	사용료	관리수수료	비 고	기 준	계	사용료	비 고		
1건당(단위:원)	100,000	73,000	27,000		1건당(단위:원)	250,000	2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6호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u>기금운 용관은</u> 시의 복지지원과장, <u>기금출납원</u> 은 시의 기초생활담당주사으로 한다.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 ----- <u>특별회계담당관</u> -----, <u>특별회계담당자</u>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 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 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운용관</u> 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u>기금출납원</u> 에게 이를 준용한 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 <u>특별회계담당관</u> ----- ----- <u>특별회계담당자</u> ----- --
제5조(수입) ① <u>기금운용관</u> 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① <u>특별회계담당관</u> ----- ----- -----
제6조(지출) ① <u>기금운용관</u> 은 수급권자 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비 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 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 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u>기금출납원</u> 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 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u>특별회계담당관</u> ----- ----- ----- ----- ----- ----- ----- ----- ----- ----- ②----- ----- <u>특별회계담당자</u> -----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u>기금운용관</u> 은 급여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u>대불금</u> 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제7조(대지급금--) <u>①특별회계담당관</u> ----- <u>대지급금</u> -----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2.05.15>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지체없이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2.05.15.>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대지급금-----

1. -----
2. -----
3. -----

②대지급금-----대지급금-----

③-----대지급금-----

제8조(결손처분)-----

-----대지급금-----
-----금-----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7호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동진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0조제3항” 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으로, “3월 이내에” 를 “80일 이내에”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자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별표1]</p> <p>제1조(목적)-----제142조</p> <p>제9조(자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80일 이내에-----</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8호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활동)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 한다” 를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 로 한다.

1부터 5까지 생략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p> <p>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p>[별표1]</p> <p>제3조(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1~5 삭제</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29호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p> <p>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u>보육시설</u></p>	<p>[별표1]</p> <p>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 ----- -----</p> <p>1. -----<u>어린이집</u></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0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제11조제2항 중 “예술진흥 업무 계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3월이내”를 “80일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군산시의회 소속위원회 위원장, 복지관광국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지부장(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p>

제11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술진흥 업무 계장이 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예술과장-----.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 80일이내-----.

②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1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를 “제7조제2항” 으로 한다.

제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관 또는 회칙에 표기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p> <p>8.·9.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 5. (생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제7조제2항</u>----- ----- ----- ----- -----.</p> <p>8.·9.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u></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2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문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를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합창단은 단무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를 “합창단은 트레이너가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6조 전문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를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 제5항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 를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전문을 삭제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실기전형과 지휘자, 문화예술과장의 근무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3항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3항 “문화체육과장” 을 “문화예술과장” 으로 “예총지부장” 을 예총 회장 “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4조 제1항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를 “정기·기획·합동 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정기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은” 을 “정기·기획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하고, 수시공연은” 으로 한다.

제1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u> 군산시 시립 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p>
<p>제4조(직무) ① ~ ② (생략)</p> <p>③ <u>지휘자가 유고가 있을 때에는 합창단은 단무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4조(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합창단은 트레이너가,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 (단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u></p> <p>① ~ ④ (생략)</p> <p>⑤ <u>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u></p>	<p>제6조 (단원의 위촉해제) ----- ----- 사람에게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p>
<p>제7조(단원의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단원의 위촉기간) 삭제</p> <p>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실기전형과 지휘자, 문화예술과장의 근무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p> <p>③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영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교향악단·합창단 지휘자와 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 직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참석을 제척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1조(운영위원회)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 문화예술과장----- ----- 예총회장-----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p> <p>1 ~ 7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13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연) ① <u>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u></p> <p>② <u>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u></p>	<p>제14조 (공연)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기획·합동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p> <p>② 정기·기획공연----- 수시공연----- -----</p>
<p>제15조(입장료 징수)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15조(입장료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3호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관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 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 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 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²)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²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4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1(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제3조의제1항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 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

관리법 제74조 관련)

제3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u>자동차운수사업법</u>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의1(목적) ----- -----, ----- 및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및 <u>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u> 등에----- ----- -----.</p> <p>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u>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3조(세입) ① 1~5(생략)</p> <p>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u>도로법 제43조</u>)</p> <p>7. 교통유발부담금(<u>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u>)</p> <p>8. 과태료(<u>자동차관리법 제75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u> 관련)</p>	<p>제3조(세입)①1~5(현행과 같음)</p> <p>6. ----- (----- <u>제66조</u>)</p> <p>7. ----- (----- <u>제36조</u>)</p> <p>8. 과태료(----- <u>제84조, -----제60조의3,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u> 관련)</p>

현 행	개 정 안
<p>9. 과징금(<u>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61조</u> 관련)</p> <p>10. 11, 12, 13, 14 (생략)</p> <p>제3조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u>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u>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p>	<p>9. 과징금(<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제74조</u> 관련)</p> <p>10, 11, 12, 13, 14 (현행과 같음)</p> <p>제3조 ② -----<u>제12호의</u>----- -----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5호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칭을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로 변경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로 하며,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 2.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제2항 중 “토지관리담당주사가” 를 “지가관리계장이” 로 한다.

부 칙

군산시 조례 제642호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결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6호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현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8조” 를 “제2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 를 “법 제29조” 로, “유사명칭” 을 “동일명칭” 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6조제1항” 을 “법 제34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 을 “법 제34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 을 “법 제34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u>	<삭 제>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 단등을 행한 경우 2. 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 -----. 1. ----- <u>제23조</u> ----- ----- 2. 법 제29조----- <u>동일명칭</u>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u>법 제34조제1항</u> -----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u>법 제34조제2항</u> ----- ----- ----- ----- ----- -----. <삭 제>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15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4조제2항----- ----- -----.</p> <p><삭 제></p> <p><삭 제></p>
<p>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8조(강제징수) 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p> <p><u>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관리)</u> <u>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삭 제></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7호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및 수가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징수기준(제5조제1항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검사항목및검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u>제25조</u>----- ----- ----- -----.</p>
<p>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한 <u>별도의 검사 및</u> <u>위생분야종사자진단서 건강진단서는</u> <u>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적용</u> <u>· 징수한다.</u></p>	<p>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한 <u>검사항목 및 수가산정기준은</u> <u>별표 2와 같다.</u></p>

【별표 1】 <개정2002.11.30, 2015.04.30>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건강진단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삭제 2015.04.30>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삭제 2015.04.30>			
9.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0. 1통 초과시	1통	100	
11.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	
12. <삭제 2015.04.30>			
13. <삭제>			
14. 건강진단 결과서<신설>	1통	1,5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삭제>

【별표 2】 <개정2002.11.30., 2015.04.30>

검사항목 및 수가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검 사 항 목	검사구분	수가산정기준	비 고
가. 건강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 체중 · 혈압, 시력, 청력, 색신 · 흉부 엑스선촬영 · 간염항원 항체검사 · 혈청매독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진찰 · 방사선진단 · 임상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취업용
나. 채용건강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 체중 · 혈압, 시력, 청력, 색신 · 흉부 엑스선촬영 · <삭제> · <삭제> · 요검사(요당, 요단백) · 빈혈검사 ·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 혈액형검사 · 관계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진찰 · 방사선진단 · 임상검사 		
다.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형검사 · 관계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진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 조정 적용 	
라. <삭제>				
마. <삭제 2015.04.30>				
바.건강진단결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 성병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진찰 · 방사선진단 · 임상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8호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2” 를 “제16조의4” 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6조의4 ----- ----- -----</p>
<p>제9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 까지로 한다.</p>	<p>제9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 -----.</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39호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동진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략)</p> <p>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따른다.</p>
<p>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4. ~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준용한다.</u></p>
<p>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u>제5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u></p>	<p>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단서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u>준용한다</u>.</p>	<p>② ----- ----- ----- ----- <u>따른다</u>.</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0호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u>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③ <u>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은</u>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u>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 언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자문한다.</u></p> <p>1. <u>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u></p> <p>2. <u>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u></p> <p>3. <u>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u></p> <p>4. <u>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u>위원회의 기능을 군산시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④ <u>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9조 <삭제></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1호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지역식량계획“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 을 ““지역식량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3항”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 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6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지역식량계획"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군산시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지역식량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3항----- ----- -----.</p>
<p>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 -----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6항-----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2호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3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을 위하여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과장 및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5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을 위하여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과장 및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u> 2. <u>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u> 3. <u>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u> 4. <u>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u> <p>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4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제5조(사용중지 등의 신고)로 하고,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6조를 삭제한다.
-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②제1항의 연체금을 일할계산 적용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수난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야 한다.

제24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를 “규정을 따른다” 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략)</u> 1. 배수설비의 사용을 <u>개시·중지·폐지</u> 하거나 <u>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u> 2. ~ 4. (생략) ② (생략)</p>	<p><u>제5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u> 1. ----- <u>중지·폐지</u>-----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제6조(일시사용 신고) <삭제></u></p>
<p><u>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 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u> <u>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제></u></p>

현행	개정안
<p>제9조(시장의공사시행) 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3. <신설></p>	<p>제9조(시장의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u></p>
<p>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u>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p>	<p>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4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법』 제117조부터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01></p>	<p>제2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같음) ②----- ----- 『지방세기법』 ----- -----따른다.</p>
<p>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 ----- <u>채납된 금액에 대하여</u> <u>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u> <u>징수한다.</u></p> <p>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때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25조(연체금 및 독촉) ①----- ----- -----<u>채납액의 100분의 3에</u> <u>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u> <u>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u> <u>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u> <u>× 연체일수/365)</u></p> <p>②제1항의 연체금을 일할계산 적용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수납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5호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략)</u>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p>	<p><u>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u> ② <삭제></p>
<p><u>제5조(조직 및 인사) ①</u>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p>	<p><u>제5조(조직 및 인사) ① (현행과 같음)</u> ② <삭제></p>
<p><u>제7조(기업관리 규정)</u>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u>제7조(기업관리 규정) <삭제></u></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6호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동진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교육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제7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수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p> <p>① (생 략)</p> <p>1. ~ 3. (생 략)</p> <p>4. -----<u>교육시설</u></p> <p>5.~ 6. (생 략)</p> <p>7. -----<u>분뇨</u> <u>및 쓰레기처리시설</u></p> <p>8.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교육연구시설</u></p> <p>5.~ 6. (현행과 같음)</p> <p>7. -----<u>자원</u> <u>순환 관련 시설</u></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7호

군산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을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제3조 제5호의 “도시공원법” 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제6호의 “도로법 제3조” 를 “도로법 제2조 제2호” 로, 제7호의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의 철도시설” 로, 제10호의 “석유사업법 제9조” 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8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4조에 따른” 을 “제19의2에 따른”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 <u>제74조에 따른</u> ----- ----- -----.</p>	<p>제1조(목적)----- ----- <u>제19의2에 따른</u> ----- ----- -----.</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49호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업법」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생략) ②----- -----「건설업법」 ----- -----</p> <p>③(생략)</p>	<p>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산업기본법」 ----- -----</p> <p>③(현행과 같음)</p>
<p>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삭 제></p>
<p>제27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생략) 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매 1월 경과시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 하며 징수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27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50호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51호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 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 위원회”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를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의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③, ④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과 띄어쓰기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을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 한다.

제5조 제1항은 항이 1개인 조로 ①의 기호를 삭제하고 단서 중 “폐회기간중” 을 “폐회기간 중”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중” 을 “상임위원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회중” 을 “폐회 중”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결로써” 를 “의결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와 자격” 을 “윤리심사 및 징계”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 을 “위원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위원회의” 를 “특별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

을 “폐회 중”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상임위원중” 을 “상임위원 중” 으로 한다.

제13조 중 “회의규칙” 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행정복지위원회 12명 3. 경제건설위원회 11명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p> <p>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u>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u>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가목의 국·소에서 행정지도하고 있는 사업소 사무 및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u>농업기술</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u>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p> <p>①상임----- ----- -----</p> <p>② 상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나. ----- 다. ----- ----- 2. 행정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u>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u>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 ----- 3. 경제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u>농업기술</u>

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가목의 국·소에서 행정지도하고 있는 사업소 사무 및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

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상임-----

폐회기간 중에-----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

 --
 ② 상임-----상임위원 중에서-----

 ③ 상임-----

 ④ 상임-----

 ----- 폐회 중에는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② 의회는-----

 ③ 의회는-----윤리심사 및 징계에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관한 사항-----

④ 특별-----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

② 특별-----
위원 중-----

③ 특별위원회-----
-----폐회 중에는-----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

② 특별-----
-----상임위원 중에서-----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

② 부위원장은-----

③ 위원장이-----

④ 각-----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② 소위원회에서-----

<p>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u>사항</u> <u>외의</u>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u>회의규칙</u>을 준용한 다.</p>	<p>제13조(준용규정) ----- <u>사항 외의</u>----- -----<u>군산시의회 회의규칙</u>----- -----</p>
--	--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29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동진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30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전형시기와 전형위원의 위촉은 지휘자의 요청 및 추천에 따라 단장이 결정하며” 를 “전형시기와 방법 및 전형위원(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단장이 결정하며” 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상임단원의” 를 “악장 및 상임단원의” 로 한다.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2회연속 80점 이상일 경우 경고를 소멸한다.”

제6조 제3항 “출산,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에게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평정으로 갈음 할 수 있다” 를 “출산,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 할 수 없는 단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수시평정을 실시한다. “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실시”

“제2호 연주단원의 실기평정은 지휘자와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근무평정은 전년도 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호 사무단원은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제5항 “예술단원과, 사무단원” 을 “악장과, 예술단원, 사무단원” 으로 한다.
제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평정대상, 방법 및 기준 등 정기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제7항, 제7항 제1호, 제7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정기평정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제7항 제1호 근무경력 2개월 미만 신규 위촉단원

“제7항 제2호 평정년도 신규 위촉단원 실기평정”

제6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항 정기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고, 단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별표11을 신설하고 별표의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9” 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단원의 전형방법) ① (생 략)</p> <p>② <u>전형시기와 전형위원의 위촉은 지휘자의 요청 및 추천에 따라 단장이 결정하며 전형대상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u></p> <p>1 ~ 3 (생 략)</p>	<p>제3조 (단원의 전형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전형시기와 방법 및 전형위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단장이 결정하며-----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 (정기평정) ① <u>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신 설></p> <p>③ <u>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에게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자체평정으로 같은 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6조 (정기평정) ① 약장 및 상임단원의----- ----- ----- -----</p> <p>② (현행과 같음)</p> <p>단, 2회 연속 80점 이상 일 경우 경고 소멸한다.</p> <p>③ 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 할 수 없는 단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수시평정을 실시한다.</p> <p>1.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실시</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④ (생 략)</p> <p>⑤ 정기평정 평가는 <u>예술단원과 사무단원을 구분하여 별표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u></p> <p>1 ~ 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2. 연주단원의 실기평정은 지휘자와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근무평정은 전년도 평정으로 같음할 수 있다</p> <p>3. 사무단원은 자체평정으로 같음 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악장, 예술단원, 사무단원을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⑥ 평정대상, 방법 및 기준 등 정기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p> <p>⑦ 정기평정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p> <p>1. 근무경력 2개월 미만 신규 위촉단원</p> <p>2. 평정년도 신규 위촉단원 실기평정</p> <p>⑧ 정기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고, 단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p>
<p>제1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 ⑤ (생 략)</p> <p><신 설></p>	<p>제1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별표의 비위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p>

[별표 9]

1. 악장 정기평정 기준표 (제6조 제5항 관련)

【평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소 속		분 야 (직 위)		성 명	
최초위촉일		현직위촉일		예능등급	

총 점	연주 능력 (70점)	연습참여 (15점)					직무수행태도 (15점)			가 감 점
		근무기준일(A) (000일) : 1.1~11.30 [근무기준일=연습참여일]					조직 화합	규정 준수	책임성	
100	70	수 (15) A-45일 이상	우 (13) A-(46 ~50일) 이상	미 (11) A-(51 ~55일) 이상	양 (9) A-(56 ~60일) 이상	가 (7) A-61일 미만	5	5	5	~ +5
평정자(50%)										
확인자(50%)										
평정점 ①+②										

※ 평정자 : 지휘자 확인자 : 문화예술과장

- ① 직무수행태도 : 5단계 평가 - 탁월(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 ② 연습참여점수 : 조퇴·외출(2.5시간 미만) 0.5일 연습참여로 계산함
- ③ 연주능력평정 : 지휘자 심사
- ④ 가·감점 :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 가점은 +5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별도항목)

2. 예술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6조 제5항 관련]

【평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소 속		분 야 (직 위)		성 명	
최초위촉일		현직위촉일		예능등급	

총 점	연주능력 (70점)	연습참여 (15점)					직무수행태도 (15점)			가 감점
		근무기준일(A) (000일) : 1.1~11.30 [근무기준일=연습참여일]					조직 화합	규정 준수	책임성	
100	70	수 (15) A-45일 이상	우 (13) A-(46 ~50일) 이상	미 (11) A-(51 ~55일) 이상	양 (9) A-(56 ~60일) 이상	가 (7) A-61일 미만	5	5	5	~ +5
평정자(50%)										
확인자(50%)										
평정점 ①+②										

※ 평정자 : 지휘자 확인자 : 문화예술과장

- ① 직무수행태도 : 5단계 평가 - 탁월(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 ② 연습참여점수 : 조퇴·외출(2.5시간 미만) 0.5일 연습참여로 계산함
- ③ 연주능력평정 : 지휘자와 전문위원 위촉 심사
- ④ 가·감점 :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 가점은 +5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별도항목)

3. 사무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6조 제5항 관련]

【평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소 속		분 야 (직 위)		성 명	
최초위촉일			현직위촉일		

총 점	근무실적 (4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근무태도(30점)								가감점
			근무기준일(A) (000일) : 1.1~11.30					책임성	근무평판수	태양근기	
			수 (15) A-45일 이상	우 (13) A-46 ~50일 이상	미 (11) A-51 ~55일 이상	양 (9) A-56 ~60일 이상	가 (7) A-61일 미만				
100	40	30	15	13	11	9	7	5	5	5	~+5
평정지(50%)											
확인지(50%)											
평정점 ①+②											

※ 평정자 : 지휘자. 확인자 : 문화예술과장

① 5단계 평가 : 탁월(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② 근무기준일 : 조퇴·외출(2.5시간 미만) : 0.5일 연습참여로 계산함

③ 가·감점 :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 가점은 +5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별도항목)

4. 가감점 항목

감점대상	1회당 감점적용	감점대상	1회당 감점적용	가점 대상	내용	점수
무단결근	1.0	징 계	(5~3)	포상	대통령	5
		감봉3월	5		국무총리	4
		감봉2월	4		장관,도지사, 도단위이상 예술단체	3
		감봉1월	3		시장, 시 단위 이상 예술단체	2
지 각	0.5	징 계 (견 책)	2	논문	개인발표	1
					2~3인 공동발표	0.5
					학회지 등에 발표	0.25
장시간 무단이석	0.5	경고 또는 주의	1	재능 기부	자원봉사	1

※ 가감점 :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 가점은 +5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별표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징계양정기준(제13조 관련)

비위내용 비위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무태도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집단행위 금지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위반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31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요금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의3(위원회의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9”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0”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8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간사는 요금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신 설></p>	<p>제38조의3(위원회의 심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p>

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성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심의 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9호서식>

위 축 장

위 원 ○ ○ ○

생년월일 0000. 00. 00.

군산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귀하를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수도사업소장 (직인)

<별지 제20호서식>

심 의 번 호	제 호
심의년월일	년 월 일
상 수 도 요 금 조 정 심 의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 민원인

- 주 소 :
- 성 명 :
- 가 구 수 :
- 고객번호 :

2. 민원접수일 : 년 월 일

3. 상수도요금 부과내용

4. 민원내용

5. 민원사항 조사내용

6. 기타

심 의 결 정 서

심의번호 : 제 호

수 용 가

주 소				성 명	
관리번호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m ³	
겨증납기	납기	겨증사용량	m ³	관리검침결과 월사용량	m ³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년 월 일

군산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 위원장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32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현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u></p> <p><u>제11조(점용 허가 신청) ①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u></p> <p><u>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01.07.31></u></p> <p><u>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u></p> <p><u>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31></u></p>	<p><u>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u>제11조(점용 허가 신청) <삭 제></u></p>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33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정한 조건이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람하며(필수),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 시킨 조건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며(필수),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조건) ① 조례 제12조제1항 제2호에 정한 조건이란 관내 음식점을 1회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고군산유람선관광, 근대역사박물관, 금강철새조망대 등) 1개소 이상을 포함한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조건을 말한다.</p> <p>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p> <p><신 설></p>	<p>제5조(지원조건) ① 조례 제12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p> <p>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정한 조건이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람하며(필수),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 시킨 조건을 말한다.</p> <p>③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며(필수),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 시킨 조건을 말한다.</p>

군산시 고시 제2017-4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정정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7-37(2017.03.03.)호에 의거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인명칭 등 오기(誤記) 항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7일

-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9-39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가.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사업
 - 나. 명칭(변경)
 - 1) 당초 :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가감속차로 개설공사
 - 2) 변경 :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시설번호	시설결정 내용		기 인가내용			변경 인가내용			
	연장(m)	폭(m)	연장(m)	폭(m)	면적(m ²)	연장(m)	폭(m)	면적(m ²)	증감
중로2-149	186	10~15	140	5	595	146	15	2,382	증 1,787m ²
소로3-744	128	6~7	52	1	54	52	1	54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가. 당초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길 13(진월동)
성명 : (주)하나건설 대표 장치성
 - 나. 변경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길 13(진월동)
성명 : (주)문장건설 대표 장치성 / (주)지엔종합건설 대표 정규성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6. 4. 29. ~ 2019. 9. 30. → (변경) 2016. 4. 29. ~ 2020. 6. 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가. 변경 전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대명	139-2	철	18,427	649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기 13(진월동)	(주)하나건설		

나. 변경 후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주 소	성명
1	대명	139-39	철	651	651	(주)엔종합 건설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길 13(진월동)		
2	대명	139-29	철	1,821	1,481	군산시	-		
3	대명	139-36	철	17	15	국토해양부	-		
4	대명	139-33	대	276	276	군산시	-		
5	경암	371-5	대	13	13	군산시	-		
계				2,778	2,436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시설명	위 치	개설규모				귀속의무자	귀속기관	비고
		폭(m)	연장(m)	면적(㎡)				
				변경전	변경후			
중로2-149	군산시 대명동 139-2번지	15	146	595	2,382	사업시행자	군산시 (관리청)	
소로3-744		1	52	54	54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7-45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94)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6-156(2016.12.09.)호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94)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7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17.03.17 ~ '17.03.31.)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경암동 635-25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94)사업
 - 나. 명 칭 : 군산경찰서옆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5.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2,604.2㎡ (주차장 83면)
6.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교통행정과)
7.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 참고
9. 관계도서 : 실음 생략
10. 기타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구 분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경암동	1	635-17	차	211.2	211.2	군산시					
	2	635-14	차	97.8	97.8	군산시					
	3	635-9	도	41.1	41.1	군산시					
	4	635-24	대	116.7	116.7	송제민	군산시 대명동 388-5				
	5	635-13	대	131.0	131.0	김점순	군산시 조촌동 903-1 시영아파트 가동 903호				
	6	635-18	대	86.8	86.8	조행복	군산시 경암동 635-14				
	7	635-19	대	193.1	193.1	진막동	군산시 경암동 635-19				
						오정순	군산시 경암동 635-19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 조촌동 828-1	근저당	
						최우영	군산시 경암동 635-19				
	8	635-20	대	222.1	222.1	박정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1 남양,대명아파트 202동 203호				
	9	635-25	차	274.8	274.8	군산시					
	10	635-27	차	104.3	104.3	군산시					
	11	635-28	차	159.3	159.3	군산시					
	12	635-29	대	98.1	98.1	김장석	군산시 중동 270-19				
	13	635-30	대	121.1	121.1	김영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11. 501호				
	14	635-31	대	111.3	111.3	씨제이대한통운(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15	635-43	도	499.5	135.0	군산시					
	16	635-32	대	197.4	197.4	유유임	군산시 경암동 635-32				
	17	635-23	대	129.3	129.3	안상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47 두산힐스빌아파트 108동 503호				
18	635-22	대	93.6	93.6	최남철	군산시 경암동 572					
19	635-33	대	80.2	80.2	김희순	군산시 장미동 10-2					
계	19필지			2,794.9	2,604.2						

붙임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군산	경암	635-14 635-17 635-25 635-27 635-28	담장	블록	109.0 M	군산시												
				수목	은행나무 :	1.0 주													
					은행나무 :	1.0 주													
				대문	철재	1.0 식													
				대문	철재	1.0 식													
				문주	콘크리트	1.0 EA													
2	군산	경암	635-29	주택	조적, 슬래브	76.0 m ²	김장석	군산시 중동 270-19											
					조적, 슬래브	26.0 m ²													
				창고	조적,스레트	17.0 m ²													
					지붕,스레트	5.1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1.0 M													
3	군산	경암	635-30	주택	조적, 스투트	57.0 m ²	김영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11, 501호											
					지붕(스레트)	77.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20.0 m ²													
					지붕(스레트)	27.0 m ²													
				창고	조적, 슬라브	12.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2.0 M													
4	군산	경암	635-31	주택	조적, 스투트	83.0 m ²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지붕(스레트)	106.0 m ²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	군산	경암	635-24	주택	조적, 스투트	45.0 m ²	송제민	군산시 대명동 388-5					
					지붕(스레트)	52.0 m ²							
				주택	조적, 슬라브	17.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6.0 m ²							
					지붕(스레트)	7.0 m ²							
				화장실	조적,슬라브	6.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3.0 M											
6	군산	경암	635-18	주택	조적, 함석	94.0 m ²	조행복	군산시 경암동 635-14					
				창고	목재,스레트	8.0 m ²							
					지붕,스레트	9.0 m ²							
				창고	목재,함석	7.0 m ²							
				수목	대추나무 :	3.0 주	조행복	군산시 경암동 635-14					
					B14								
					앵두나무 :	1.0 주							
					B5								
					오가피나무 :	2.0 주							
					B14								
					울나무 : B14	2.0 주							
					대추나무 (묘목) : B2	1.0 주							
					보리수 : B5	1.0 주							
					살구나무 :	1.0 주							
B5													
참빗살나무 :	1.0 주												
B10													
동백나무 :	1.0 주												
B10													
감나무 : B12	1.0 주												
매실나무 :	1.0 주												
B5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군산	경암	635-13	주택	황토, 스투트	46.0 m ²	김점순	군산시 조촌동 903-1 시영아파트 가동 903호				
					지붕(스레트)	68.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34.0 m ²						
					지붕(스레트)	40.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3.0 M						
8	군산	경암	635-32	주택	조적, 스투트	65.0 m ²	유유임	군산시 경암동 635-32				
					지붕(스레트)	96.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36.0 m ²						
					지붕(스레트)	50.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21.0 m ²						
8	군산	경암	635-32	주택	지붕(스레트)	21.0 m ²	유유임	군산시 경암동 635-32				
				창고	조적, 스투트	2.0 m ²						
					지붕(스레트)	2.0 m ²						
				창고	조적, 슬라브	9.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16.0 M						
9	군산	경암	635-23	주택	조적, 스투트	81.0 m ²	안상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47 두산힐스빌 아파트 108동 503호				
					지붕(스레트)	93.0 m ²						
				주택	조적, 스투트	34.0 m ²						
					지붕(스레트)	34.00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2.0 M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0	군산	경암	635-22	주택	조적, 슬라브	72.0 m ²	최남철	군산시 경암동 572					
					조적, 슬라브	24.0 m ²							
				창고	목조, 스투트	4.0 m ²							
					지붕(스레트)	4.0 m ²							
				대문	철재	1.0 식							
11	군산	경암	635-19	창고	조적, 함석	5.0 m ²	오정순	군산시 경암동 635-19	군산시 수산업 협동조합	군산시 조촌동 828-1	근저당		
				창고	조적, 함석	11.0 m ²							
				창고	조적, 스투트	4.0 m ²							
					지붕(스레트)	4.0 m ²							
				창고	조적, 스투트	2.0 m ²	진막동	군산시 경암동 635-19					
					지붕(스레트)	2.0 m ²							
				담장	블록	6.0 M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1.0 M	최우영							
			대문	철재	1.0 식								
			담장	블록	4.0 M								
			대문	철재	1.0 식								
			12	군산	경암	635-20	주택	조적, 슬라브	49.0 m ²	박정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1 남양대명아파트 202동 203호		
주택	조적, 스투트	45.0 m ²											
주택	지붕(스레트)	50.0 m ²											
	조적, 스투트	60.0 m ²											
	지붕(스레트)	64.0 m ²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	군산	경암	635-20	창고	조적,스레트	2.0 m ²	박정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1 남양대명아파트 202동 203호				
					지붕(스레트)	2.0 m ²						
				창고	조적,스레트	6.0 m ²						
					지붕(스레트)	6.0 m ²						
				담장	블록	10.0 M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식						
				수목	감나무 : B10	1.0 주						
13	군산	경암	635-33	주택	조적,슬라브	49.0 m ²	김희순	군산시 장미동 10-2				
				창고	조적,슬라브	5.0 m ²						
				창고	조적,기와	6.0 m ²						
				창고	창고,스레트	3.0 m ²						
					지붕(스레트)	3.0 m ²						
				문주	콘크리트	2.0 EA						
				대문	철재	1.0 M						

군산시 공고 제 2007-572 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7. 3. 28.

군 산 시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재난이 3회 발생하여 공공시설 피해는 없으며, 사유시설 피해는 50건 181백만원이며, 복구비 지원은 50건 7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대설 재난은 1회 발생하여 피해는 29건 170백만원, 복구비 지원은 29건, 7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강풍 재난은 1회 발생하여 피해는 3건 8백만원, 복구비 지원은 3건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우 재난은 1회 발생하여 피해는 18건 3백만원, 복구비 지원은 18건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우리 시의 2016년 재난발생현황은 대설, 강풍, 호우 재난이 발생하였고, 대설 재난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22명으로 5년 평균보다 2명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2명 감소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6종으로 89개소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 보다 25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459백만원 이나 1,675백만원 확보되어 115%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4년간 평균 1,549백만원 보다 126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2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4년 평균 659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사용액은 전년도 사용액 303백만원 보다 383백만원 증가한 686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6등급으로,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 안전도 등급이 증가하였습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지역안전도	0.40 미만	0.40~0.45	0.45~0.50	0.50~0.55	0.55~0.60	0.60~0.65	0.65~0.70	0.70~0.75	0.75~0.80	0.80 이상
그 룹	그룹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라'		그룹 '마'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07개소 시설 중 60개소 시설이 내진 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56%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재해복구, 재해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재난관리기금 적립·사용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방재기반시설인 하수관거와 하천, 방재시설은 지소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미확보로 지연되어 보강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으로 재난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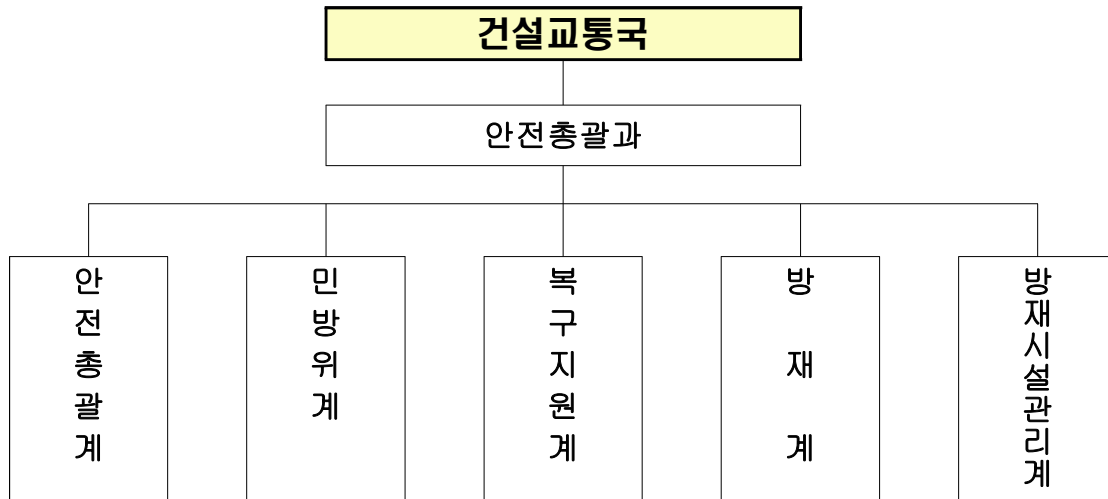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 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1.17~1.25	대설	-사유시설 : 29건 (농림시설 25건, 축산시설 4건)	-사유시설 : 29건 (복구비 69,632천원)	복구완료
4.16~4.17	강풍	-사유시설 : 3건 (농림시설 3건)	-사유시설 : 3건 (복구비 3,000천원)	복구완료
7.01~7.07	호우	-사유시설 : 18건 (농림시설 18건)	-사유시설 : 18건 (복구비 3,094천원)	복구완료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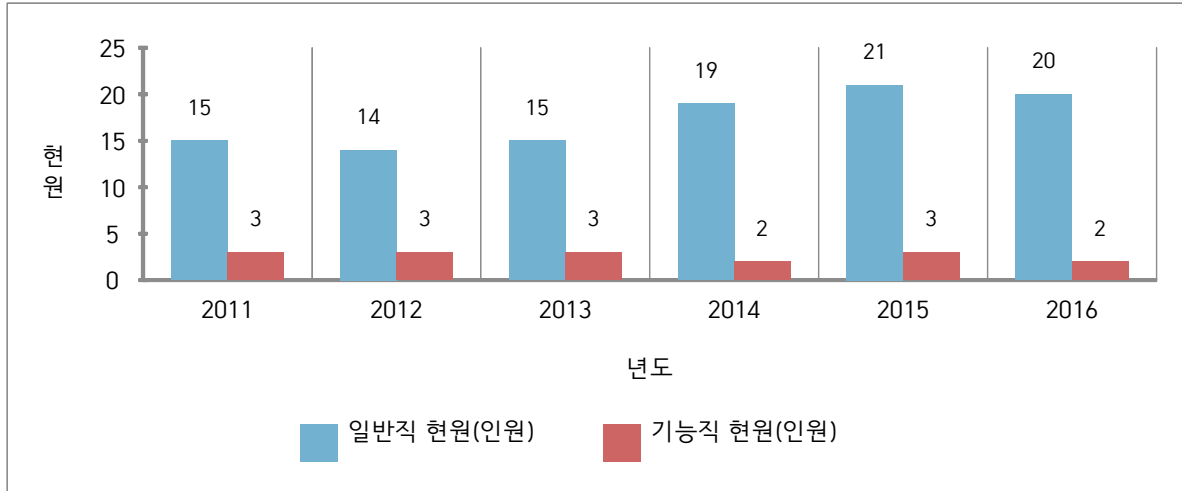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4			1	5	8	4	6		
	현원	22			1	5	8	3	3	2	
안 전 총괄과	정원	24			1	5	8	4	6		
	현원	22			1	5	8	3	3	2	

※ 안전총괄과 외에도 재난상황에 따라 13개분야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하여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탄력적으로 운영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직 현원(인원)	15	14	15	19	21	20
기능직 현원(인원)	3	3	3	2	3	2



☞ 사직 및 타 시·군 진출로 인하여 2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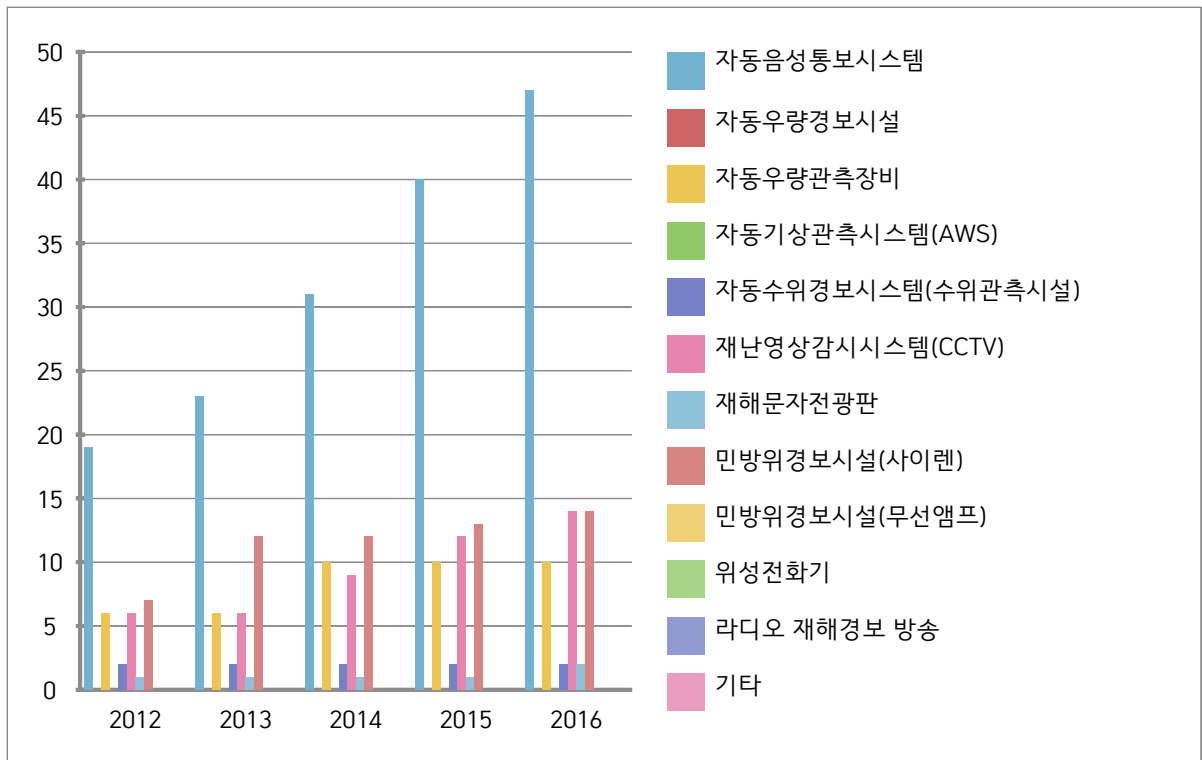
☞ 2017. 2월 조직개편 시행으로 조직 및 분장사무 변경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7	옥도면 말도리 146 등
자동우량경보시설	0	
자동우량관측장비	10	군산시청 등 읍면동사무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0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2	수송동 7-103 등 2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4	경포천갑문 등 13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	소룡동 연안여객터미널 등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4	군산시청 읍면동 등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0	
위성전화기	0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0	
기타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9	23	31	40	47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6	6	10	10	10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2	2	2	2	2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	6	9	12	14
재해문자전광판	1	1	1	1	2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7	12	12	13	14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 2012년 수해피해이후 지속적인 예·경보 시설물 확충

☞ 산단지역 화재, 가스누출 등 사회재난 취약지 예·경보시설 확충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 고
지진해일실무	1.1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정	1.16 ~ 2.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기 재난안전체험 과정	3.11	전라북도	2	
제1기재난관리전문교육(실무자)과정	4.11~4.12	전라북도	3	
제1기 재해·재난대비 과정	4.27~4.29	전라북도	3	
재난관리(수리시설안전)실무	5.2~5.4	전라북도	1	
재난관리전문교육(부서장) 과정	5.11	전라북도	3	
맞춤형 재난관리 전문교육	5.12	전라북도	7	
제2기 재난안전체험	6.10	전라북도	1	
제2기 재해 재난대비 과정	6.22~6.24	전라북도	1	
제3기 재난안전체험 과정	9.9	전라북도	4	
맞춤형 재난관리 전문교육	10.20~10.21	전라북도	16	
도시군재난대응협업역량강화워크숍	10.27~10.28	전라북도	2	
재난대응을 위한 청원대상 재난안전교육	11.10	군산시	7	
제2기재난관리전문교육(실무자)과정	10.20~21	전라북도	3	
지진등 재난대비 역량강화교육과정	12.15~16	전라북도	7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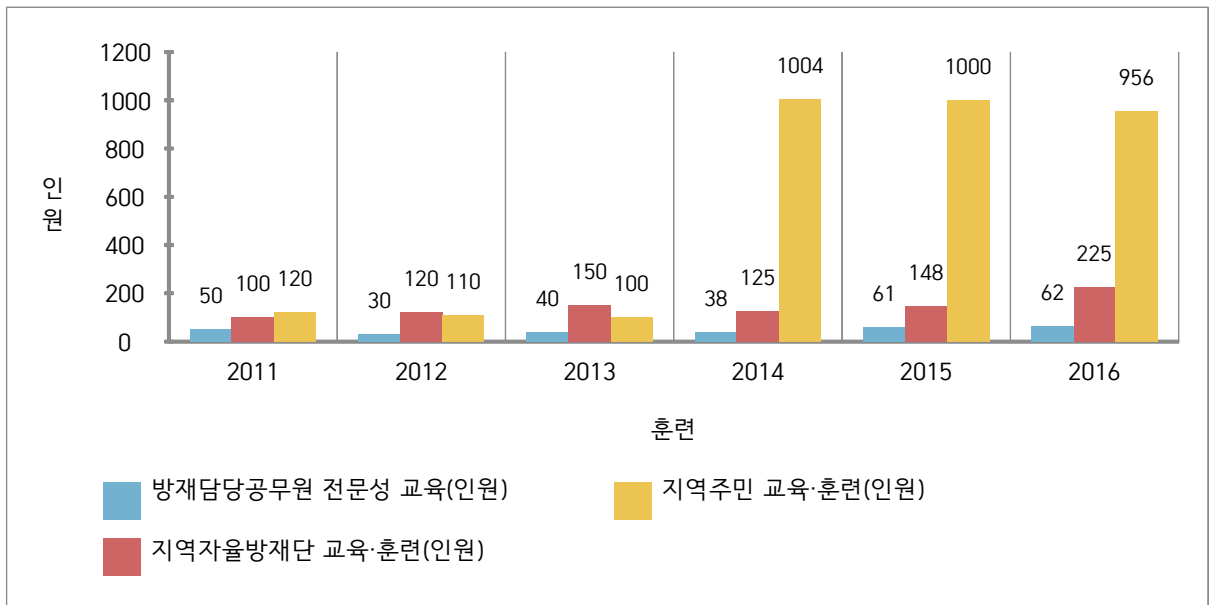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3.29	비응항 및 인근해상	50	현장훈련, 주민대피	군산시 자율방재단	
6.18~19	재난종합상황실	12	재난심리적지지 일반 교육	군산지역 자율방재단	
10.12	새한아파트	150	지진현장 대피훈련	군산시 자율방재단	
11.21~22	천안상록리조트	5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국민안전처	
11.6~20	장항청년회의소	8	심리사회적지지 강사강의	대한적십자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주관	비고
지진해일대응 민관군합동훈련	3.29	비응항 및 인근해상	460	대규모 지진해일 대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군산시 외 13개 기관단체	
불시 긴급구조 통제단가동훈련	3.31	타타대우 상용차	107	화재로 연소 확대된 상황으로 부여된 메시지에 따른 훈련	군산시 외 7개 기관단체	
항공기 사고 대비현장훈련	9.22	군산공항	156	여객기 화재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	군산시 외 6개 기관단체	
해안방제 합동훈련	9.27	비응도	83	대규모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해안방제 대응훈련	군산시 외 5개 기관단체	
지진대응 현장대피훈련	10.12	새한아파트	150	지진대피요령 및 상황 전파	군산시, 방재단 경암동 주민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50	30	40	38	61	6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100	120	150	125	148	225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20	110	100	1,004	1000	956



- ☞ 방재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 교육·훈련은 작년 기준 큰 변화 없음
- ☞ 방재단 교육훈련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9.21~22	부안 변산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3	안전모니터봉사단 역할 및 안전신고 활성화 방안 토론	전라북도 생활안전과	
10.25	서울시 백범김구기념관	1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및 현안사항 설명	국민안전처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안전모니터(327명)	47	47	-	-	100%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날행사	캠페인 실시	매월4일	관내	매월 60명↑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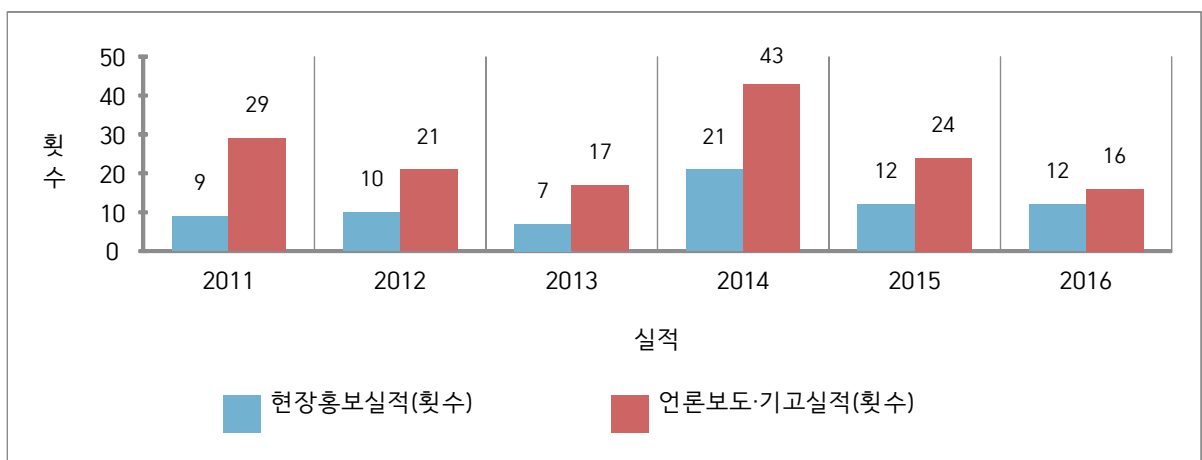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군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7	전북연합신문	
2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7	전주일보	
3	군산시, 안전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7	전북타임스	
4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6/9	전북타임스	
5	한마음 한뜻으로 대비해요 시, 여름철 안전수칙 홍보활동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6/9	새만금일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6/9	전주매일	
7	군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6/9	전북연합신문	
8	'다함께 안전한 도시 만들어요'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6/9	전주일보	
9	군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6/9	전라일보	
10	시, 고속버스터미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8	전주일보	
11	군산시-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8	전라일보	
12	군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8	전라매일	
13	군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5	전북연합신문	
14	군산시, '제24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5	전주매일	
15	군산시, 휴가철 맞이 물놀이 사고대처 방법 폭염피해 행동요령 홍보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5	새만금일보	
1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5	전북연합신문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장홍보실적(횟수)	9	10	7	21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29	21	17	43	24	16



☞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운동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시장 • 위 원:2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 위 원: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건설교통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무반▽

△주관부서▽

△지원부서▽

① 재난 상황 관리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방재 응급 복구	⑤ 에너지 기능 복구	⑥ 재난 자원 지원	⑦ 교통 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 봉사 관리	⑪ 사회 질서 유지	⑫ 수색 구조 구급	⑬ 재난 수습 홍보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통신과	환경정책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자원순환과	가족청소년과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공보담당관
총무과 환경정책과	복지지원과 기획예산과		수도과 하수과		환경정책과 기획예산과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생활지원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자원순환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안전총괄과,KT군산지사)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시설관리부서)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지역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공보담당관)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사업과)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가족청소년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군산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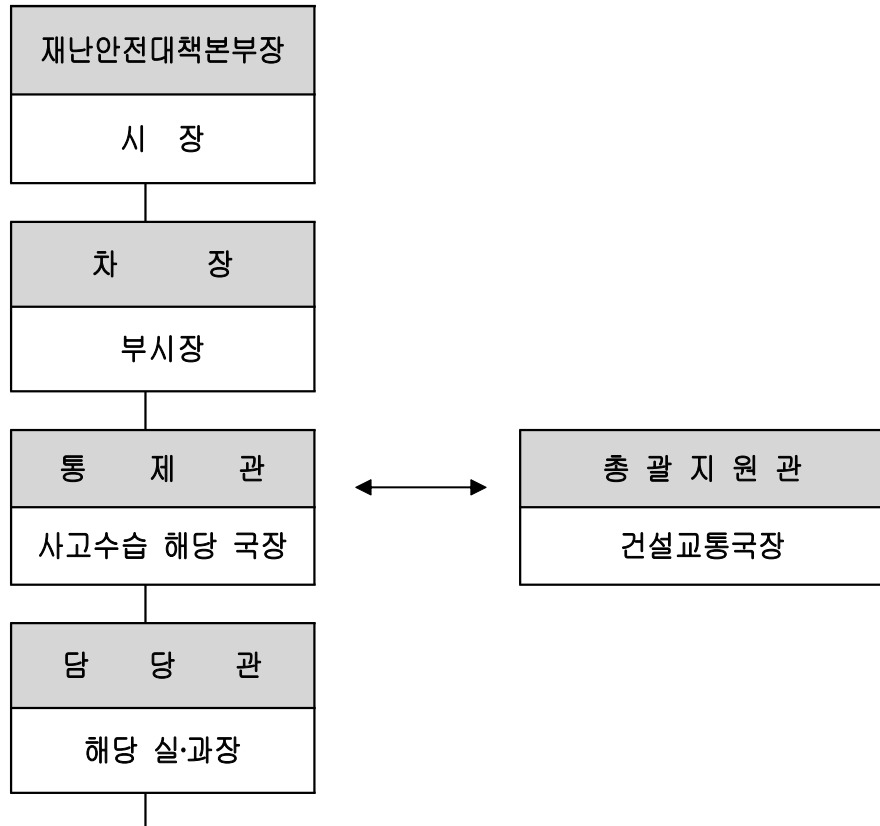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군산소방서,군산해양경비안전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풍수해재난]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13개 분야 협업부서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상황관리 총괄반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재난현장 환경지원반	긴급통신 지원반	시설 유지보수반	에너지 기능복구반	재난수습 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 및 구조·구급반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전화번호
군산교육지원청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450-2714
군산의료원	○ 응급의료 운영, 환자이송 및 관리	472-5000
대학적십자사 전북지사	○ 대피소 설치 및 구호물품 지급	280-5831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 가스탐지, 안전진단, 응급복구 및 사고 요인 조사	272-0019
군산도시가스	○ 주변지역 가스 밸브차단 조치	440-7700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사고 안전대책	450-1300
군산경찰서	○ 주민소개, 사고원인 조사 및 인명구조 및 병력투입 현장통제	441-0339
군산소방서	○ 탐지, 제독, 화재진화, 사고원인조사	450-0252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바다오염(대형사고 소화액등 바다유입)	539-2000
전북일보	○ 피해 최소화 및 응급복구 재난방송	468-7006
군산자원봉사단체	○ 피해주민 돌봄 등 지원	451-1365
KT군산지사	○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수립	462-0060
육군제9585부대	○ 인력 및 장비 지원	464-9113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06.1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자연재난·인적재난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05.13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005.02.5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5.05.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04.6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7.11.30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4.04.28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조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4.07.14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0.08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1.02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교통 수송	군산항	부두시설 (29선석)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07.11.23	관리기관 정기점검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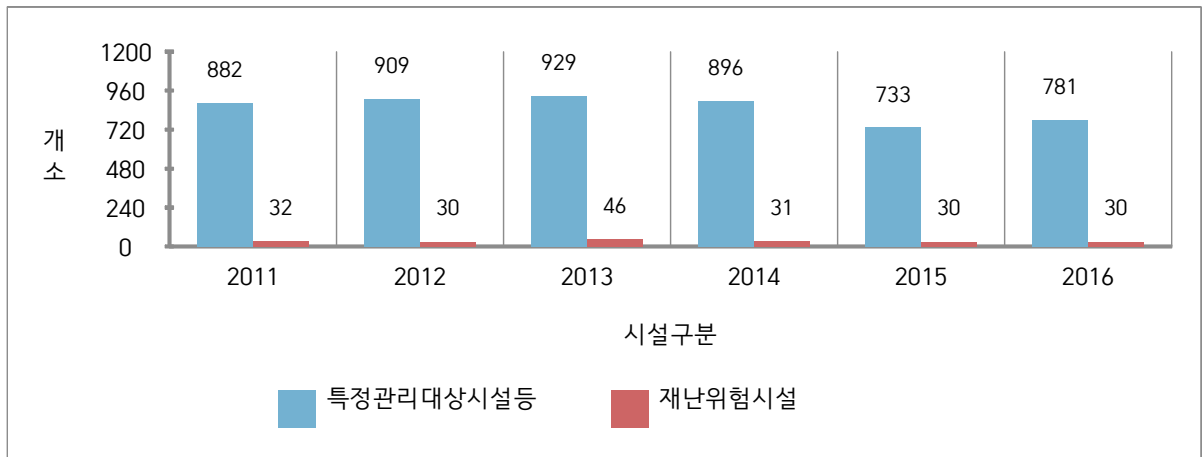
총 계	시설물						건축물								비 고
	소 계	교량	터널	육교	유원시설	대형공사장	소 계	국도업무시설	국도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광구물	건축공사장	기타	
781	49	38	1	3	1	6	732	5	524	145	39	8	10	1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781	751	329	345	77	30	29	1	
시설물	49	47	1	25	21	2	2		
건축물	732	704	328	320	56	28	27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정관리대상시설등	882	909	929	896	733	781
재난위험시설	32	30	46	31	30	30



☞ 특정관리대상시설 2015년 대비 48개소 증가

(대형건축물 공장 등 증가 및 종교시설 관리대상 개소 조정)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공동주택	주공3단지	27개동	민간	2010	재건축	24,300	정기점검	2018
교량	신기2교	1개소	군산시	1999	철거	300	차량제한	2020
교량	농마교	1개소	군산시	1996	재가설	4,670	차량제한	2022
공공 업무시설	규제청사	1개소	군산시	1996	보수보강	2,609	보수중	2018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2.25~6.10	731	731	23	시설관리부서	현지시정 11 보수지시 22
하반기	9.1~11.25	781	781	34	시설관리부서	현지시정 3 보수지시 31

[정비실적]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공공 업무시설	구제3청사	지상3층 1,237㎡	군산시	1996	2018 예정	2,609	보수보강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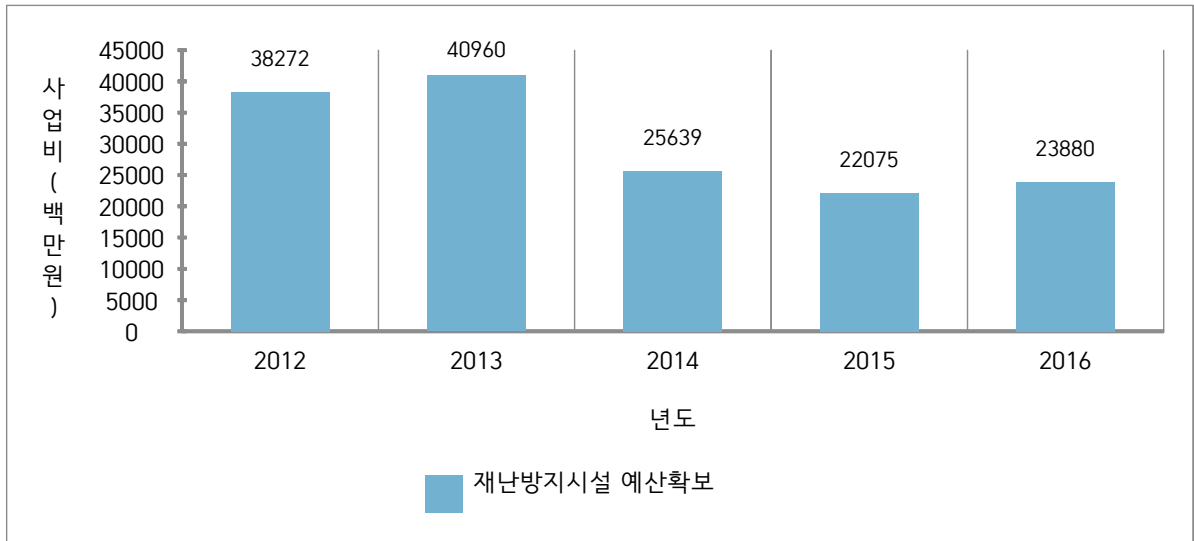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경포천 재해 예방사업	수송동~경장동	하천정비 L=2.25km	'06~'18년	43,968	도심지 침수 사전예방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미룡동~옥구 수산리	하천정비 L=4.7km	'09~'18년	37,870	치수·이수적 안전하천조성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송동~회현 월연리	하천정비 L=6.3km	'16~'20년	115,692	도심저지대 침수예방
내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장미동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15~'17년	16,890	도심저지대 침수예방
군장산단 유수지 정비사업	비응도동	누수제방정비 L=1.0km	'16~'18년	7,228	집중호우시 침수예방
동백대교 붕괴 위험지역정비사업	해망동	사면정비 V=3,960㎡	'16~'18년	1,944	붕괴위험 지역정비
해망3 붕괴위험 지역정비	해망동	사면정비 V=6,400㎡	'16~'18년	1,000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무녀방조제 개보수사업	옥도면 무녀도	방조제개보수 L=0.58km	'14~'17년	5,707	방조제개보수
신시방조제 개보수사업	옥도면 신시도	방조제개보수 L=0.37km	'15~'18년	6,000	방조제개보수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38,272	40,960	25,639	22,075	23,880



☞ 2012. 8월 집중호우 이후 2012~2013년 피해복구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등 지속적 사업시행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km	만매	km	kl
총계	9.0	0.76	7.8	0.08	0.36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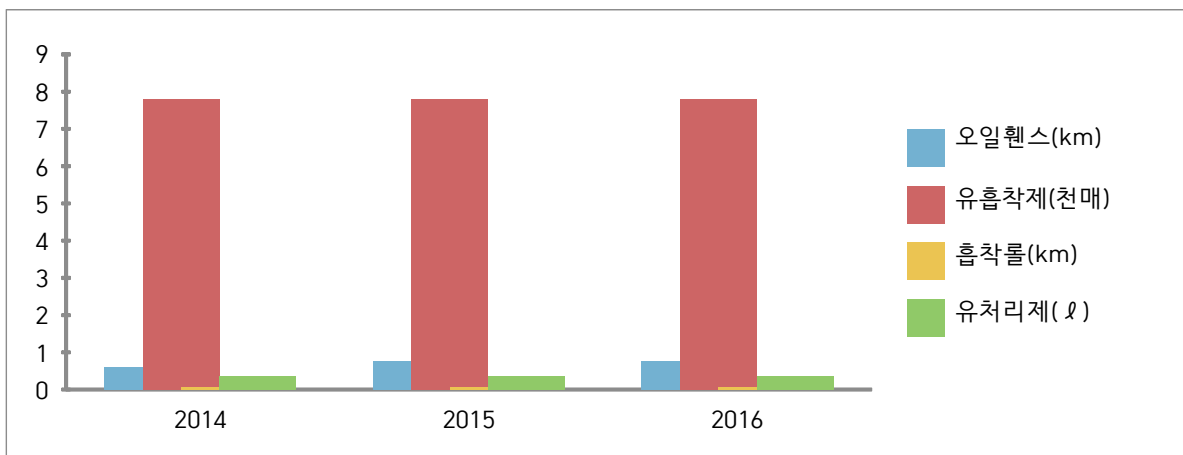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164	371	665	30	3,897	2
병 원	160	341	640	18	3,897	2
보건소	1	30	25	2	0	0
기 타	3	0	0	10	0	0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63	13,335	26	11,359	0	0	32	975	5	1,001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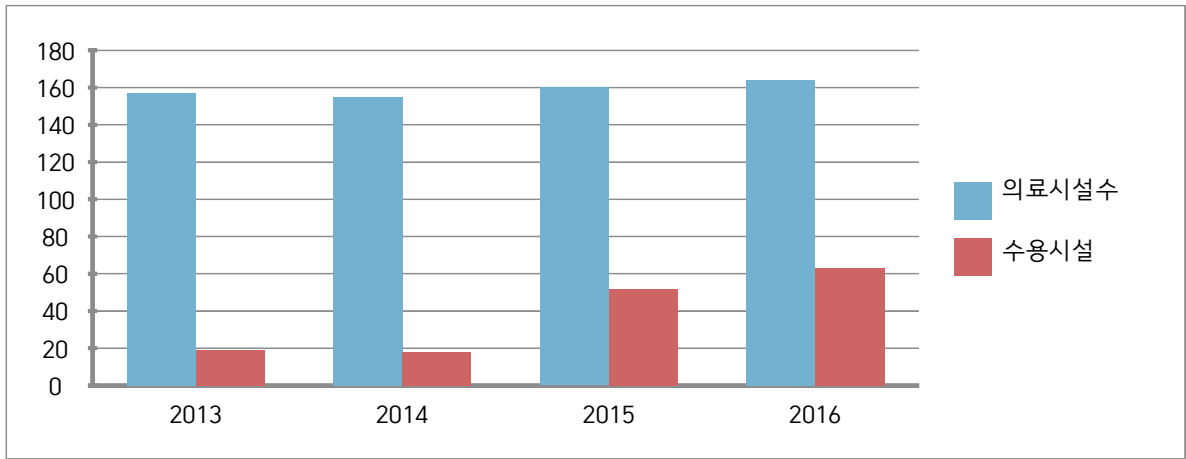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4	2015	2016
오일웬스(km)	0.6	0.76	0.76
유흡착제(만매)	7.8	7.8	7.8
흡착물(km)	0.08	0.08	0.08
유처리제(ℓ)	0.36	0.36	0.36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의료시설수		157	155	160	164
수용시설	개소	19	18	52	63
	수용인원	13,392	12,325	13,436	13,335



☞ 수용시설의 경우 전년도 보다 11개소 추가 지정하여 증가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 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총 계	4	2	1	1	0

◆ 복구장비

구 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저	덤프	기타
총 계	5	-	1	-	1	3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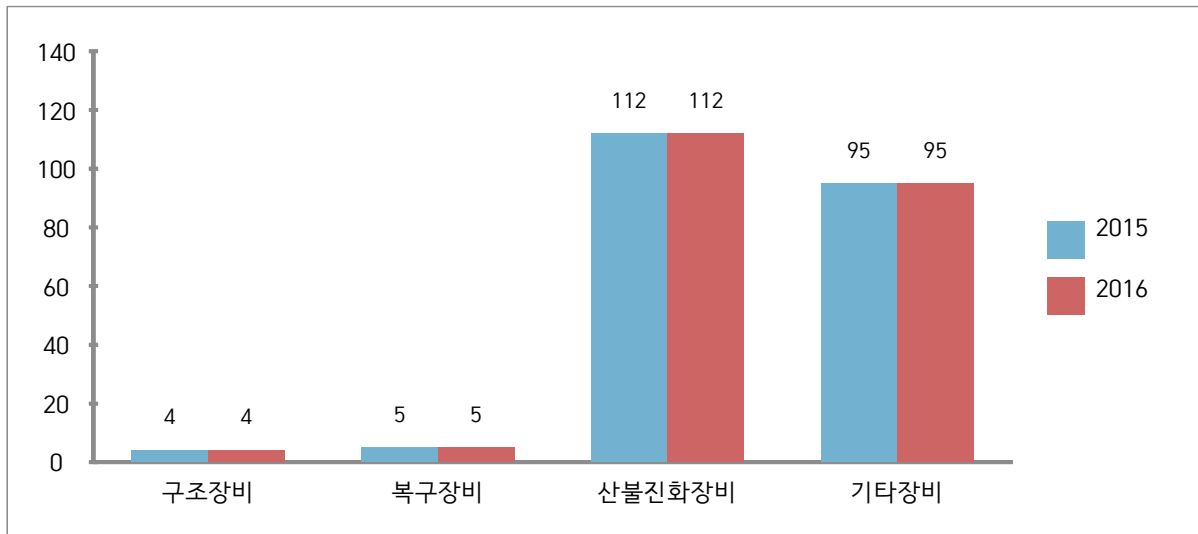
구 분	계	헬기 보유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동력 펌프	등짐 펌프	동력톱
총 계	112		1	4	10	90	7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퓨터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기타
총계	95	1	-	33	3	-	-	58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5	2016
구조장비	4	4
복구장비	5	5
산불진화장비	112	112
기타장비	95	95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51	12	10	1	12	9	1	3	3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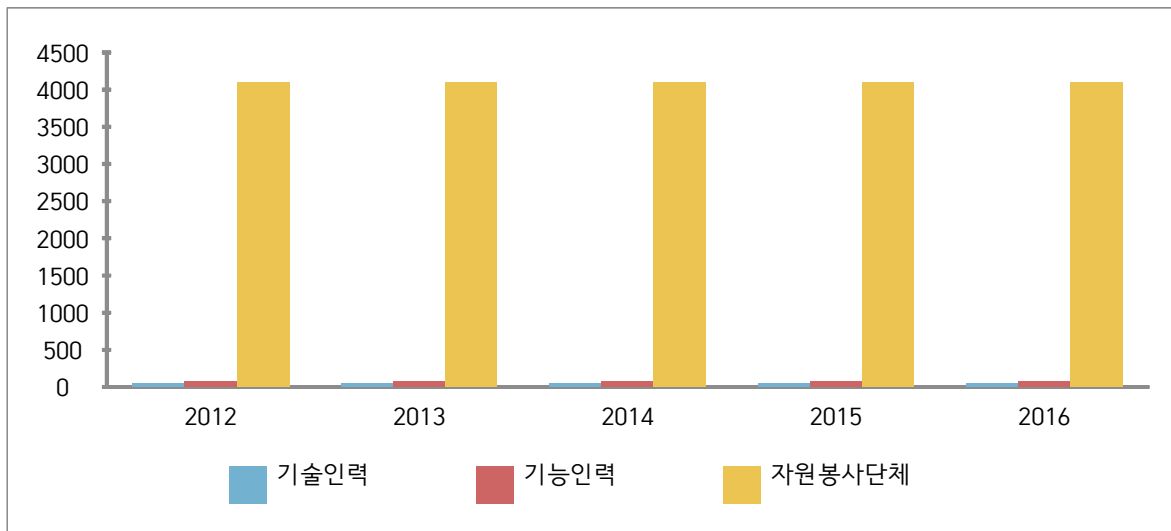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인원	72	30	9	10			21	2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4,103	660					230	476	150	87		2,5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술인력	51	51	51	51	51
기능인력	72	72	72	72	7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4,103	4,103	4,103	4,103	4,103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 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재난관리 실태점검	2016. 1.28.~ 1.29.	국민안전처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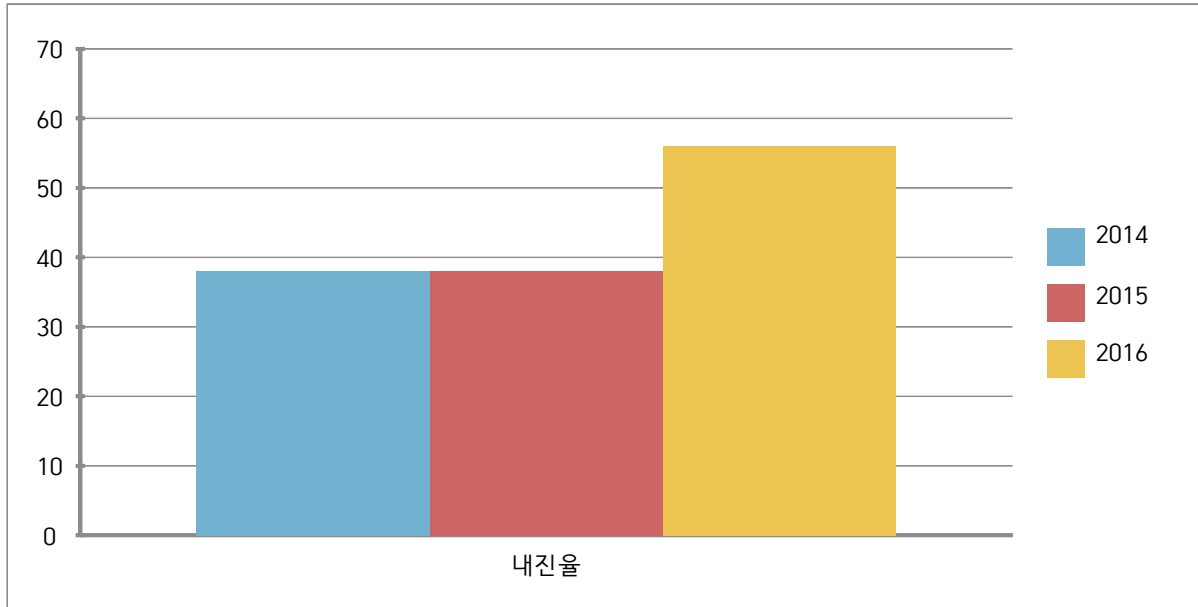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최우수, 우수, 장려)·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5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합 계	107	60	-	-	56
공공건축물	26	12	-	-	46
교 량	59	30	-	-	51
터 널	3	2	-	-	67
폐수종말처리장	1	1			100
수도시설	4	2	-	-	50
어항시설	5	5	-	-	100
공공하수처리시설	9	8	-	-	89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내진율	38	38	56



☞ 예산부족 및 지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 저조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층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여	부	여	
종합상황실	여	부	여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해	당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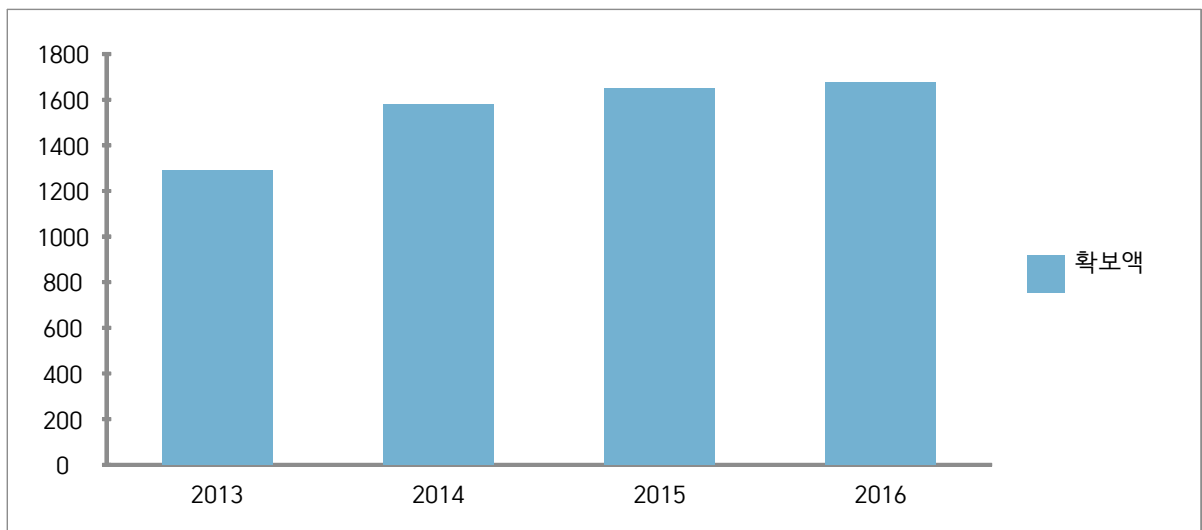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459백만원	1,675백만원	1,675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확보액		1,292	1,581	1,651	1,675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971	562	243	560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38		33	12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족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7	



☞ 법정적립기준에 의거 기금확보

☞ 2011년도는 시재정상 미확보 되어, 2015년에 추가 계상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재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7	풍수해재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7	지진재난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7	대형화산폭발
댐붕괴 매뉴얼		2016.7	댐붕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2016.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보통신과	2016	정보통신분야
전력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지역경제과	2016	전력분야
산불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산림복지과	2016	산불재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해양수산과	2016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연근해어선 사고현장조치 매뉴얼		2016	연근해어선 사고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정과	2016	가축질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정책과	2016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	대규모 수질오염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현장조치매뉴얼	건설과	2016	도로터널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현장조치매뉴얼	건축경관과	2016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교통행정과	2016	육상화물운송분야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도과	2016	식용수분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투자지원과	201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6	감염병
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	보건의료분야
청사위기관리 대응매뉴얼(자체)	총무과	2016	청사위기관리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가스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경제과	2016	가스분야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매뉴얼(자체)	문화예술과	2016	문화재 재해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교통행정과	2016	항공기 사고
군산시 사회재난 위기관리 대응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사회재난 위기관리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매뉴얼		2016	재난종합상황실 매뉴얼
군산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매뉴얼		2016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매뉴얼
산사태 예방 대응 행동매뉴얼	산림복지과	2016	산사태 예방
침수예방 행동매뉴얼	하수과	2016	침수예방
공연장 안전매뉴얼	예술의전당	2016	공연장 안전
위기상황 안전매뉴얼	시립도서관	2016	위기상황 안전
위기상황 매뉴얼	철새조망대	2016	위기상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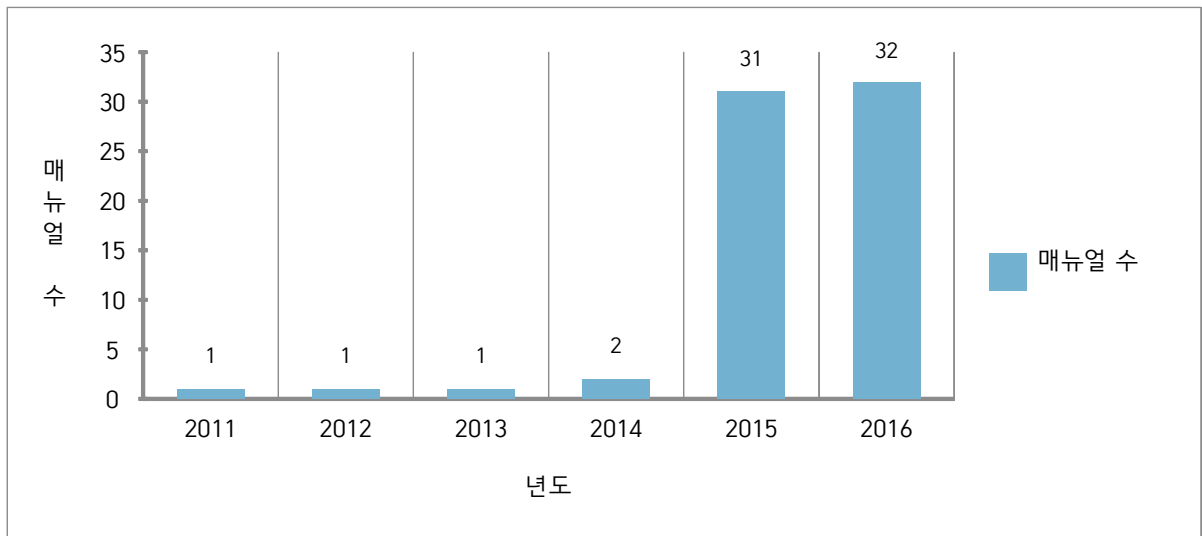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군산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2016.7	현행화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지진해일	2016.3.29.	지진해일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자연재난 협업부서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상시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시 참여 등 체계적인 대응능력 제고필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16.5.16.	다중시설 대형화재에 따른 토론기반훈련	매뉴얼 보완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뉴얼 수	1	1	1	2	31	32



☞ 자연 및 사회재난 행동매뉴얼 정비로 인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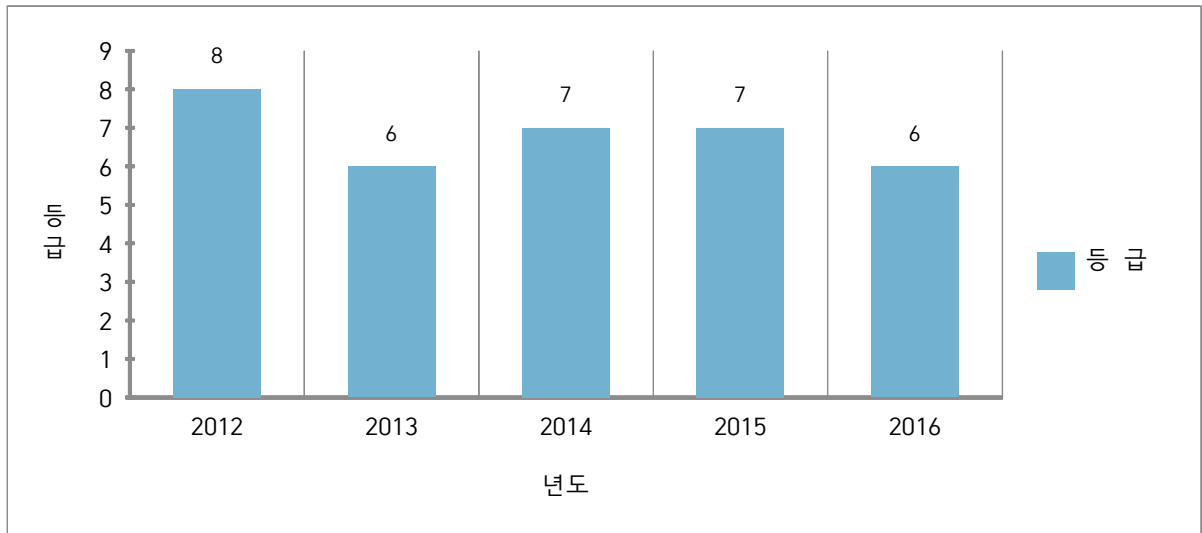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496	0.861	0.625	6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등 급	8	6	7	7	6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지역안전도	0.40 미만	0.40~0.45	0.45~0.50	0.50~0.55	0.55~0.60	0.60~0.65	0.65~0.70	0.70~0.75	0.75~0.80	0.80 이상
그 룹	그룹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라'		그룹 '마'	



☞ 2012년 집중호우 이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4652(2016.10.21.)호로 2016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음.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군산시 안전총괄과(담당자 : 김덕충, 전화 : 063)454-386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